

평창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장문혁 의원)

의안 번호	440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: 2022년 01월 13일

발 의 자 장문혁 의원

찬 성 자 지광천, 심현정, 이명순의원

1. 제안이유

본 조례안은 평창군 내 소상공인 시설개선 사업과 관련하여
사업지원 대상자 기준을 완화하고, 지원비율을 상향조정 지원함으로써
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에 힘쓰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시설개선 사업의 지원대상에 있어 평창군 거주기간과
해당사업영위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변경(안 제8조제2항)
- 나.. 지원대상자 시설개선 사업비 지원비율을
기존 최대 50퍼센트에서 80퍼센트로 변경(안 제8조제3항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
- 나. 예산조치 : 붙임 참조(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)
- 다. 입법예고 : 2021. 12. 30. ~ 2022. 01. 16.(17일간), 의견 없음.
- 라. 집행기관의견수렴 : 2021. 12. 27.~ 2021. 12. 30. 의견 없음.

평창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2항 중 “3년 이상 주민등록”을 “2년 이상 주민등록”으로, “3년 이상 계속하여”를 “2년 이상 계속하여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최대 50퍼센트”을 “최대 80퍼센트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8조(시설개선 등 지원) ① (생략)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시설개선 사업의 지원대상은 평창군에 최근 <u>3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, 평창군에서 해당사업을 3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</u>으로 한다.</p> <p>③ 군수는 지원대상자에게는 시설개선 사업비 1천만원 이내에서 최대 <u>50퍼센트</u> 범위까지 지원할 수 있다.</p>	<p>제8조(시설개선 등 지원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2년 <u>이상 주민등록</u>----- ----- 2년 이상 계속 <u>하여</u> ----- -----.</p> <p>③ ----- ----- -----<u>80퍼센트</u>----- -----.</p>

[관계법령]

지방자치법

제28조(조례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제8조제2항 중 “3년 이상 주민등록”을 “2년 이상 주민등록”으로, “3년 이상 계속하여”를 “2년 이상 계속하여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최대 50퍼센트”를 “최대 80퍼센트”으로 한다.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5항

3. 미첨부 사유

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1억원 미만인 경우

※ 개정조례안 기준 예상 지원 금액

(단위: 개소, 백만원)

사업별	2020년		2021년		2022년 예상(150%)	
	지원업체수	지원액	지원업체수	지원액	지원업체수	지원액
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	17	80	13	58	23	104

※ 산출기초 : 2020년과 2021년 사업량의 평균 × 150%

- 2022년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 현재 예산 : 85백만원

4. 작성자

작성자	평창군 일자리경제과장 김재봉
연락처	(033) 330 -2540